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과 학사운영지침

제정 2009. 3. 1.
개정 2011. 4. 7.
개정 2013. 3. 21.
개정 2015. 8. 6.
개정 2017. 11. 1.
개정 2019. 01.31.
개정 2021. 12. 30.

제1조(목적)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과의 학사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시험 및 모집인원) 한의과학과 입학시험과 신입생의 모집 인원은 부산대학교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전공) ① 한의과학과에는 석사 및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며 한의과학전공의 단일 전공으로 한다. 단일 전공 내 세부 전공은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해부학, 예방의학, 원전학, 의사학, 한방내과학, 사상체질의학, 한방신경정신과학, 한방소아과학, 한방부인과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 한방재활의학, 침구의학 등으로 한다.

② 전공의 신설이나 폐지는 한의학 학술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 정한다.

제4조(한의학 학술학위과정 운영위원회) ① 한의학 학술학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의학 학술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일반대학원 한의학과장,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과장 그리고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일반대학원 한의학과장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과장이 호선한다.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제반 활동
2. 전공의 신설 및 폐지 심의
3. 전공별 모집인원 배정 심의
4. 학기별 개설 교과목 결정
5. 교육과정 관련 제반 활동
6. 학위논문 관련 제반 활동
7. 한의과학과 학사운영지침의 개정 심의
8. 복합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지도교수) ① 학생은 연구실 순환을 통해 최종 학위연구실과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② 한의과학과 교수는 각 학년별로 3명 이하의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③ 정년퇴임 기간이 2년 이하의 교수는 학생을 배정받을 수 없다.

④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려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 내 동일 세부 전공의 교수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지도교수는 매 학기 강좌를 개설해야 하며, 3학기 연속으로 강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부터 3년간 학생 배정을 제한한다.

제6조(연구실순환) ① 학생은 입학 후 첫 일 년간 최소 3곳 이상에서 각 2개월 이상의 연구실 순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입학 당시 최종 학위연구실과 지도교수를 선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연구실의 책임교수는 학생을 지도할 의무를 가지며, 해당기간 동안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합격(P) 또는 불합격(F)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F로 평가받은 경우 연구실 순환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P로 평가받은 연구실의 결과는 인정하고, F로 평가받은 연구실은 다시 순환할 수 없다.

⑤ 연구실은 부산대학교 내의 연구실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타 대학교의 연구실도 가능하다.

제7조(연구계획서 등)

①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은 학위 논문 연구를 위한 연구계획서를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박사학위 과정생은 학위논문제안서를 당해 연도에 공개 구두 발표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제안서 제출 후 매년 연구진행보고서를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당해연도에 공개 구두 발표하여야 한다.

④ 학위논문제안서와 연구진행보고서가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회 이상 승인받지 못할 경우 학위과정을 지속할 수 없다.

제8조(최종 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에 최종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이수(예정)자

② 학위청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③ 석사과정은 주저자로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저자(주저자 또는 공저자)로 국제학술지에 게재확정 되거나 출판된 논문이 있을 경우

④ 박사과정은 주저자로 국제학술지[SCI, SCIE, SSCI, A&HCI]에 게재확정 되거나 출판된 논문이 있을 경우. 다만, SCI, SCIE 논문은 영향력지수(IF) 합이 3.0 이상이어야 함. 이때 학위과정 학생과 지도교수가 주저자이어야 하며 입학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 이후 게재된 것만을 인정한다.

⑤ 지도교수 세부 전공과 관련된 학점을 최소 1/3 이상(석사과정 8학점, 박사

과정 12학점 이상) 이수(예정)자

제9조(학위논문 심사위원회)

-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제안서 제출 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의 경우 3명, 박사과정의 경우 5명으로 한다.
- ③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④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심사 시 대학원생은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운영)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학사운영규정,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규정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3. 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1.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01. 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2. 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